

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 정관

2011년 5월27일 제정

2011년 12월28일 개정

2016년 5월17일 개정

2022년 11월 4일 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)

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”(약칭 “김대중재단”, 영문명 KIM DAE JUNG FOUNDATION, 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 (목적)

법인은 제 15대 대통령이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이어받아 널리 펼치는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8-1번지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내외 다른 지역에 2개 이상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4조 (사업)

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김대중대통령 기념관 설립 및 운영
2. 김대중연구소 설립 및 운영
3. 김대중대통령의 초상권, 지적재산권 및 유품 관리
4. 연구·학술활동 및 국내외 출판 사업
5. 인재양성 및 교육·장학사업
6. 인권향상과 사회복지 사업
7. 국제교류 및 연대 사업
8. 김대중평화센터,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 사업
9. 기타 법인의 목적 수행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
②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5조 (무상이익의 원칙)

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.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다.

제6조 (수혜평등의 원칙)

- ①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.
- ② 법인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제 2 장 임 원

제7조 (임원의 구성)

- ①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이사장 1인
 2. 상임부이사장 1인
 3. 부이사장 1인
 4. 상임이사 5인 이내
 5. 이사 10인 이상 25인 이내
 6. 감사 2인
- ② 제1항 제5호의 이사에는 이사장, 상임부이사장, 부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.

제8조 (임원의 선임)

- ① 이사와 감사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설립 당시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- ③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 (임원의 해임)

-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
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4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부당행위

제10조 (임원의 결격사유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1. 미성년자
 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4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유예 또는 종료되지 아니한 자
-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.

제11조 (임원 선임의 제한)

-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회 정수의 1/3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2조 (임원의 임기)

- ①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3조 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
-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14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

- ① 이사장이 사고, 궐위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, 이사장 및 상임부이사장이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업무를 대행하는 상임부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15조 (명예이사장)

-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명예이사장을 위촉할 수 있다.
- ② 명예이사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16조 (상임부이사장과 상임이사)

-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부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- ② 상임부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- ③ 상임부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정한다.

제17조 (감사의 직무)

- ①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1. 법인의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
 2.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 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 3 장 이 사 회

제18조 (구성)

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, 상임부이사장, 부이사장, 상임이사, 이사로 구성한다.

제19조 (이사회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과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년 2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③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토의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
제20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
-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2.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.

제21조 (서면결의)

사업 및 지원에 관한 긴급 사안은 서면결의를 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다음 이사회에서 보고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2조 (의결정족수)

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3조 (이사회 의결사항)

-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2.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
 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4.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5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6.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7. 법인의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8.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·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
 9.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10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할 사항

제24조 (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)

-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25조(이사회회의 회의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
-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4 장 고문과 자문

제26조 (고문, 자문)

- ① 본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해 상임고문과 고문을 둘 수 있다.
- ② 본 법인의 자문위원장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③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이사장이 정한다.

제 5 장 위원회

제27조 (위원회)

- ① 법인의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1.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상당수의 부위원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.
 2. 위원장과 부위원장, 위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
 3. 위원장과 부위원장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 6 장 재산과 회계

제28조 (재산의 구분)

-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1.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 당시 출연한 기본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기본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과 평가액은〈별지1〉과 같다.
 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29조 (재산의 관리)

- ① 제28조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0조 (수입금)

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31조 (차입금)

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32조 (회계연도)

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.

제33조 (예산편성 및 결산)

-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연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.
-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4조 (세계 잉여금)

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 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
제35조 (계속비)

법인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.

제36조 (임원의 보수)

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근 부이사장, 상임이사에 대하여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, 다른 이사들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37조 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
- ①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1. 법인의 설립자
 2. 법인의 임원

3. 법인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4.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- ②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 할 수 없다.

제38조 (회계감사)
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9조 (기부금의 공개)

법인이 정관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
제 7 장 사무 부서

제40조 (사무국)

-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사무총장과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 8 장 수익사업

제41조 (수익사업)

-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 종류별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-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.

제42조 (수익사업의 기금 관리)

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.

제 9 장 보 칙

제43조 (법인의 해산)

- ① 법인의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.

제44조 (정관의 변경)
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5조 (업무보고)

-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6조 (공고사항 및 방법)

-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.
 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국의 소재지 변경
 2.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

제47조 (운영규정)

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48조 (준용규정)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,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제 10 장 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 (설립자의 기명날인)

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붙임 1: 설립발기인 명단

붙임 2: 법인 재산 목록